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1. 9.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대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전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함

□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관련】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함(안 제4조)
-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함(안 제6조)
-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안 제6조)
-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안 제7조, 10조)
-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안 제11조)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안 제13조)
-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안 제14조)

【주민자치위원회관련】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안 제15조, 제16조)
- 주민자치위원(15인 이상 25인 이내)은 읍면동장이 위촉(안 제17조)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안 제23조)
-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 폐지(안 부칙 제3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 센터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전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방법)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 하에 정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의 적용) 이 조례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관실·과·소		자치행정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담당 신성현
자	담당자 성명·전화	오재환 644-2113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1. 9.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체제의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의 호스트(서버)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등을 받아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제공시스템의 사용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정함(안 제5조의2)
- 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정함(안 제21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수입증지표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의”를 “제5조 및 제5조의2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계기 사용”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으로 하고, 제3항중 “계기의 고장”을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으로 하며, “계기상의”를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상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무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박순자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자	담당자 성명·전화	김춘래 (행정 2188)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21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수입증지표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 및 제5조의2의</p> <p>-----</p> <p>-----</p> <p>-----</p> <p>②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p> <p>-----</p> <p>-----</p> <p>-----</p> <p>③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p> <p>-----</p> <p>-----</p> <p>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상의</p> <p>-----</p>

이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1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I.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함.

II. 주요골자

○자치센타와 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정함(안제3조)

○자치센타는 읍면동사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명칭을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제4조)

○자치센타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정함 (안제5조)

○시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함(안제6조 제1항)

○자치센터 운영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주민은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제11조)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제15조)

O 위원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도록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제17조)

O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제21조)

III. 관련 법적근거 :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IV.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운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현재 읍·면·동의 업무를 감안할 때 인력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조문정리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O 안제5조 제1항에서 “자치센터는……… 수행하여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였는바, 입법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시하면”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은 입법내용 표현의 명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함.

〈수정의견〉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제6호를 신설 “기타 제1호내지 제5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하에 정한다”로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 하므로 “읍·면·동장과”를 “읍·면·동이”로, “위원회의 협의”를 “위원회와 협의”로 함이 타당하여 검토가 필요함.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수입증지조례증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I. 제안이유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처리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II. 주요골자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전자수입증지 표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의2 제1항)
-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부서장으로 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함(안제5조의2 제3항)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21조)

III. 관련 법적근거 :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운영 지침

IV. 검토의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시스템 운영과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다양화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설치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점을 고려 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장소를 기관이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